

2026년도 평택시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 채용 공고

평택시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에서는 2026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간제 근로자(간호사)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안중보건지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근무지
간호사	1명	2026. 10. 1. ~ 2026. 11. 30.	○ 인플루엔자 및 기타 예방접종기록 전산 등록·관리, 미접종자 관리 등 ○ 국가예방접종사업 사업 지원 (민원응대, 백신 관리 등 업무 전반 등) ○ 기타 보건(지)소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안중 보건지소

2. 근무조건

가. 채용구분 : 기간제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6. 10. 1.(목) ~ 2026. 11. 30.(월)

※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 주5일(월~금), 1일 8시간(주 40시간 / 근무시간 09:00~18:00)

라. 보수기준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단가」 기준에 따라 지급

- 일급 104,560원(13,070원 * 8시간)

* 2026년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에 준하여 지급

- 4대보험 의무 가입, 주휴수당 및 월차 지급

마. 복 무 :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바. 기 타 :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1)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3항에 의거, 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8세 이상이며, 남자일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2)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⑦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⑧ 평택시 공무원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⑨ 근로계약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 ⑩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5)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6)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간호사 면허 소지자

다. 우대조건

- 1) 면허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9. 8.(화) ~ 9. 14.(월)

나. 접수처 :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2층 예방접종실(031-8024-8634)

다. 접수방법

1)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시간 : 근무시간 내 접수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1)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정해진 요건의 서면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면접일시 추후 개별통보)

1)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적격성 등 검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1차 합격자가 채용분야 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 최종합격자 외 3명의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2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추가 채용 예정

※ 제출서류 반환기간: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 응시자가 요구 시 가능

다.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서류 제출 시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가. 응시원서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평택시청 및 소속 공공기관 근무이력 있는 자는 반드시 기재

다.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라. 면허신고 확인증 및 보수교육 유예확인서

마.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각 1부

바. 채용서류반환청구서 1부

7. 기타사항

가.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접수된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는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간 제출한 내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감염병대응팀(☎ 031-8024-86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응시원서		
응 시 분 야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위 본인은 2026년도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예방접종실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평택시장 귀하		접 수 번 호

<서식2>

이 력 서

사진 필요없음

☐ 개인신상

성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세)			
현주소				
현소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락처	자택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역	군필여부		기타사항	
	최종계급			

☐ 교육배경

구분	내용				
학력 및 전공 (고등학교 이상 기재)	학교명	입학년월일	졸업년월일	전공	학위
논문 저술 賞 등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면허증	종 류	등 록 번 호
어 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실무 경력 (해당분야와 관련된 것 만 기재)

연번	근무 또는 참여 기간(년 월)	주관단체 또는 근무기관	근무부서 또는 사업명	담당분야 또는직책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날인)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장 귀하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2026. . .

작성자 ○ ○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성장배경, 좌우명, 전공분야, 근무나 연구 활동 및 업적, 채용직무분야 발전방안 및 근무자세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택보건소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기간제근로자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본인은 평택시에 채용예정인 기간제근로자로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평택시 공무원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험에 부정행 방법으로 응시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평택시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10.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한, 이상과 같이 위 기간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적발 포함)될 때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보고 할 것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로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평택시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연 해지되며,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평택시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u>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u>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u>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지 원 자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필요시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의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평택시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